

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-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박춘선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 외 26명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- 동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반려동물 보호자의 의무교육 필요성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를 반영하여 동물 입양 전 교육 수료 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수수료 감면을 지원하는 사항을 담았습니다. 또한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해 ‘서울 동물보호의 날’을 지정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.
- 이는 반려동물 보호자 교육을 통해 반려동물 유기 및 반려동물로 인한 사건·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, 동물보호에 대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함입니다.
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
안 제12조에서 ‘서울 동물보호의 날’을 정하고, 적합한 행사
개최 및 관련 사업의 실시와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토록
하였으며,
- 또한 안 제25조에서 반려동물 입양 교육 수수료 시 등록대상동
물의 등록수수료를 감면토록 규정하였습니다.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, 원안대로
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